

2024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24. 5.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회의명	2024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일시	2024. 5. 3.(금) 10시
회의장소	영상회의
심의위원회	제1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위원 정남철 위원, 노승용 위원, 이한재 위원, 이단비 위원 ○ 배석 이동판 정보공개팀장(간사), 박성미 주무관(서기)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28 : 근무평정 계산자료 및 성과연봉 지급순위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28 : 기각

1. 의안번호 2024-28 : 근무평정 계산자료 및 성과연봉 지급순위

○ 000 위원장

첫 번째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28호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가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인사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정보공개청구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23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성과연봉에 관한 지급계획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청구한 내용은 2023년 상반기 근무평정계산자료하고, 하반기 근무평정계산자료, 그리고 시간선택제 성과연봉 지급순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비공개로 일단 판단하셨는데 이것은 공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비공개 사항으로 보고 인사자료로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사유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 보시고 안건을 상정해 주셨는데요.

여기 비공개 자료 중에서 엑셀파일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개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고, 사실 이의신청은 이게 비공개 사유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더 공개해 달라 이런 지금 내용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팀장님께서 보실 때 여기 전체 엑셀자료 중에 당사자가 알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000 팀장

당사자가 알고 있는 내용은 지금 등급만 알고 있어요.

○ 000 위원장

그것만 알고 있군요. 구체적인 점수나 이런 거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고.

○ 000 팀장

네.

○ 000 위원장

그다음에 성과연봉계산에 있어서 성과연봉 자체는 결과를 알고 있는 건가요?

○ 000 팀장

그렇지요. 성과연봉도 등급만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내역을 공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후의 공정한 인사관리가 어렵다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비공개 사유는 또 명확히 밝혀져서 사실 이 안건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기보다는 그냥 왜 비공개가 됐는지 그 사유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 000 팀장

그런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런데 다시 공개해달라는 취지가 숨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본인이 청구서 내용에 쓰지는 않아서 명시적으로 쓰여 있지는 않은데요.

○ 000 위원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유를 선의로 해석해서 결국은 왜 비공개 대상이 되고, 그 사유를 밝혀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선의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내역을 다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이후에 업무에 어떤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지 그걸 설명을 좀 해달라는 취지 같습니다.

혹시 팀장님, 공개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이후 인사관리가 힘든 점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000 팀장

평가항목이나 배점같은 평가기준은 그분들한테는 알려드렸거든요. 알려드렸는데, 본인 점수를 알고 싶어하는데요. 본인 점수를 알게 되면 이게 직원들 간에 경쟁이 붙어서 과

적단속 중에 중대재해 사고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등이 우려됩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은 물론 이걸 공개하는 게 인사관리에 어려운 점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서울행정법원 판례나 이런 걸 보면 적어도 총점 정도는 공개를, 순위나 이런 거는 공개하는 게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하지만요.

지금 단속과 근무 100점으로 환산, 그러니까 총점으로 이렇게 했던 그 점수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엑셀파일 상반기 근무평정에 총점은 공개해도 됩니까?

○ 000 팀장

총점을 알게 되면 이분이 이게 어떻게 나왔냐 그리고 또 다 공개해달라고 할 거 같은데요.

○ 000 위원장

물론 그 부분은 공개할 수 없다는 사유를 제시하고 당신이 받은 점수는 얼마입니다 이거는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총점 정도는 당사자가 알아야 자기가 왜 등급을 이렇게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테니까요.

○ 000 팀장

네.

○ 000 위원장

순위는 어떻습니까? 순위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 000 팀장

순위를 알려주면 이게 19명 중에 순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경쟁이 조금 생길까 봐 걱정이 됩니다.

○ 000 위원장

과도경쟁은 부차적인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거를 공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게 드러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000 팀장

그렇지요.

○ 000 위원장

그렇다면 적어도 이 총점은 공개, 100점 만점으로 해서 단속과 근무 이거 합산한 거는 공개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 000 팀장

네.

○ 000 위원장

여기서 혹시 당사자가 근무평정 중에서 어떤 거를 제일 알고 싶어합니까?

○ 000 팀장

감독자평가 10점 이 점수에 대해서 몇 점을 맞았는지 알고 싶어하더라고요.

○ 000 위원장

감독자평가 이거를 공개하게 되면 좀 곤란할 수 있나요?

○ 000 팀장

이게 감독자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이거를 보고서는 차후에라도 또 민원을 제기하고 막 그럴까 봐 걱정됩니다.

○ 000 위원장

민원 제기는 지금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이후에 인사관리하는 데 많은 문제가 된다 이런 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세부적인 평가의 공개가 이후에 인사 근무평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지장을 주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공개를 잘 하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지금 언급한 내용 중에서 총점 정도는 저희가 좀 공개를 해 줘도 당사자가 자기가 왜 이런 등급을 받았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거는 공개를 했으면 하는데요.

○ 000 팀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근무평정으로 갈등이 많아서 다 공개를 하면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담당자분이 부연설명도 하신다고 하니까요.

○ 000 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 000 주무관

사실 총점도 공개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평가가 정량평가랑 관리자 평가로 되어 있는데요. 정량평가는 단속실적 같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알고 있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총점을 알려주면 평가결과를 알 수 있어서요. 평가등급만 통보를 해 주지, 직원들한테 당신이 몇 점이고 몇 등이라서 이걸 받았다라고 공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총점을 알려주게 되면, 평가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이거는 결국은 인사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

하나 여쭙볼 게 있는데요.

이게 자기가 S, A, B가 나왔을 때 내부적으로 이의신청해서 설명을 듣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 000 주무관

저희들 서울시 규칙에 따르면 본인이 불만이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의신청을 하면 평정자와 기관장인 확인자가 검증하게 돼 있습니다.

검증해서 이의신청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기각처리를 하고요. 기각처리를 하면 대신에 기각한 이유를 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지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래도 불만이면 상위 실국 단위로 이 사람이 이의신청을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이분이 원하는 목적은 자기에 대한 평가가 부당하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서 정보를 받고자 하는 것인데 그 정보를 받지 않더라도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상급자나 상급기관에서 검토해서 설명을 해 주거나 할 기회는 있는 거네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

알겠습니다.

꼭 공개해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여쭙봤는데요. 인사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공개할 목적이 더 큰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중에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일단 두 분은 잠깐 나가 계시고, 저희가 의결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장

우리가 잠깐 논의를 했는데요. 저도 이의신청 자체가 좀 불명확하고, 그 사유를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의로 살펴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명백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하는 게 조금 어떨까를 고민했고요. 최소한 공개한다면 총점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봐서는 총점도 공개를 했을 때는 나머지 항목이 많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비공개로 의견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저도 위원장님과 똑같이 비공개 의견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

저도 이걸 공개했을 때 개인이 얻는 이익보다 업무수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비공개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결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각 결정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의안번호 제2024-28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공개 결정입니다.